#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경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098 발 의 년 월 일 :2020년 12월 28일 발 의 자 :이경선, 강동길, 김제리, 김종무, 문장길, 양민규, 이동현, 이상훈, 이승미, 이은주, 이준형, 임만균, 장상기, 정진철, 채유미, 최 선, 추승우 의원(17 명)

###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종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에 관한 시장과 사용자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시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공 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처우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사업 실시·모범 공동주택 지원·노동자 상 담실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종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동주택 노동자"란 공동주택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의 노동자를 말한다.
  - 2. "사용자등"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제1호의 공동주택 노동자를 고용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처우를 개선할 의무를 가진다.
  - ③ 사용자등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고, 계약서 및

취업규칙으로 정한 업무범위 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 ④ 사용자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처우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1.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처우 개선 추진 방향
  - 2. 제1호의 추진 방향에 따른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 3.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여건 및 고용 환경 개선 방안
  - 4.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및 고용 환경 관련 조사 연구의 실시
  - 5.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세울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노동자, 사용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세울 수 있다.

- 제5조(공동주택 노동자 지원사업)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 환경 파악 및 적절한 조치의 권고
  - 2.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비용의 지원
  - 3.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노동자 자 조단체 활성화 추진
  - 4. 공동주택 노동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
  - 5. 폭언이나 폭행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 지원
  - 6.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모범 공동주택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모범 공동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때에 지정 여부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의 휴게시설을 조성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동주택 노동자 상담실) 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 사용자등과의 갈등 해소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 노동자 상담실

- 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 상담실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상담실에 맡기거나 노동자 지원 관련 단체 또는 기 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 노동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3. 제6조에 따른 모범 공동주택의 지정 및 휴게시설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 4.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 노동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공동주택 노동자와 사용자등과의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인 공동주택과장과 당연직 위원인 노동정책담당관을 포함하여 13명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운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노동, 인권 등에 관한 분야의 조교수, 수석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명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명

- 3. 노동, 인권 등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노동단체 또는 공동주택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린 때
- 2.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 ④ 자문위원회의 운영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이 경우 시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와 사용자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문서번호

20201216000000004

# 비용추계서

요 청 인 : 이경선 의원 담 당 : 남승우 과장

이정수 팀장

원동아 예산분석관

접 수 일: 2020.12.16.

회 신 일: 2020.12.22. 내용문의: 02-2180-795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목 차

- Ⅰ. 비용추계 요약
-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Ⅰ.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공동주택 노동자 지원사업), 제6조(모범 공동주택 지원), 제7조 (공동주택 노동자 상담실), 제8조(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자문위원회) 및 제9조(인권 교육 및 홍보)에 따라 비용 발생

####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 대상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공동주택 노동자 지원사업), 제6조(모범 공동주택 지원), 제7조(공동주택 노동자 상담실), 제8조(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자문위원회), 제9조(인권 교육 및 홍보)

#### 나. 전제

- 안 제4조제2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및 안 제4 조제3항 실태조사는 5년 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
- 안 제5조 공동주택 노동자 지원사업 비용은 사업내용이 유사한 노동정책담 당관의 기 추진 사업인 2020년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센터 운영'사업예산을 준용하여 비용추계
- 안 제6조 모범 공동주택 지원 비용은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 익보호 방안 대책'(주택건축본부, 2020.6.)방침서의 서울시 공동주택관 리규약 준칙 이행 모범단지 지원 인센티브 소요예산(1,000,000천원, 10,000천원×100개 단지)을 준용하여 비용추계
- 안 제7조 공동주택 노동자 상담실 비용은 제5조에서 준용한 노동정책담당관 기 추진 사업인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센터 운영' 사업내용에서 심리상 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추계 하지 않음
- 안 제8조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자문위원회 구성은 총 13명으로 노동정책담당관(공무원)1명, 외부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개최는 연 2회(정기회)로 전제
- 안 제9조 인권 교육 및 홍보 비용은 사업내용이 유사한 노동정책담당관의 기 추진 사업인 2020년 '노동권리안내서 및 권리장전 제작'사업예산을 준용하여 비용추계

-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은 미반영
-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추계기간 5년으로 함(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 발생)

###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13,061,230천원(연평균 2,612,246천원)

(단위: 천원)

구분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세입	-	_	_	_	_	_	_
	소계(a)	_	_	_	ı	_	_
세출	공청회, 토론회 개최 (안 제4조제2항)	25,000	_	_	-	_	25,000
	실태조사 (안 제4조제3항)	200,000	_	_	-	_	200,000
	공동주택 노동자 지원사업 (안 제5조)	1,541,666	1,541,666	1,541,666	1,541,666	1,541,666	7,708,330
	모범 공동주택 지원 (안 제6조)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자문위원회 (안 제8조)	5,580	5,580	5,580	5,580	5,580	27,900
	인권 교육 및 홍보 (안 제9조)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소계(b)	2,792,246	2,567,246	2,567,246	2,567,246	2,567,246	13,061,230
총 비용(b-a)		2,792,246	2,567,246	2,567,246	2,567,246	2,567,246	13,061,230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원동아

® 02-2180-7953

e-mail: dongya1@seoul.go.kr

####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비용요소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공동주택 노동자 지원사업), 제6조(모범 공 동주택 지원), 제8조(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자문위원회), 제9조(인권 교육 및 홍보)에 따라 비용 발생

#### 2. 세부 추계내역

- 공청회, 토론회 등 : 25,000천원×1회(2021년)=25,000천원
  - 개최 비용은 노동정책담당관의 2020년 '노동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토론회'예산 25,000천원 수준으로 적용하여 산출
- 실태조사 : 200,000천원×1회(2021년)=200,000천원
  - 실태조사 비용은 노동정책담당관의 2020년 '프리랜서 종합지원 실태조 사'예산 200,000천원 수준으로 적용하여 산출
- 공동주택 노동자 지원사업 : 연 1,541,666천원×5년=7,708,330천원
  - 연간 비용은 노동정책담당관의 2020년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민간위탁금 예산 1,541,666천원 수준으로 적용하여 산출
  - ※ 2020년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사업내용 : 심리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강사 양성, 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호체계 구축, 자조모임 지원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식 개선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등
  - ※ 2020년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예산(1,541,666천원)
    - 인건비(13명) : 547,761천원
    - 운영비 : 239,870천원
    - 사업비 : 754,035천원
- 모범 공동주택 지원 : 연 1,000,000천원×5년=5,000,000천원
  - 연간 비용은 노동정책담당관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 방안 대책'(주택건축본부, 2020.6.)방침서의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이행 모범단지 지원 소요예산(1,000,000천원, 10,000천원×100개 단지)을 적용하여 산출

-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자문위원회 : 연 5,580천원×5년=27,900천원
  - 연간 위원회 설치·운영비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연간 위원회 업무 추진 경비
    - ▶ 5,580천원 ≒ 4,800천원 + 780천원
    - $\cdot$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구성원 수  $\times 1$ 인당 회의참석 수당  $\times$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 4,800천원 = 12명 × 200,000원 × 2회
    - 연간 업무추진 경비 = 전체 위원 수 $\times$ 1인당 업무추진비 단가 $\times$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 780천원 = 13명 × 30,000원 × 2회
    - ※ 회의참석 수당은 진행 2시간 이상 1인당 20만원 적용(시 공무원 및 시의원 지급제외) ( '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2020.7.))
    - ※ 업무추진비 단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별표1]에 따라 3만원으로 책정
- 인권 교육 및 홍보 : 연 20,000천원×5년=100,000천원
  - 연간 비용은 노동정책담당관의 2020년 '노동권리안내서 및 권리장전 제작'예산 20,000천원 수준으로 적용하여 산출